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2
----------	------

발의연월일 : 2026년 7월 31일

발 의 자 : 최승태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공무원의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여비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금의 상한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한편,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을 의장 수행업무 담당 비서와 차량 운행 담당자로 구체화함(안 제2조제3항)
- 나.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 상한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함(안 제4조제1항)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3. 검토의견

- 가. 입법 필요성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급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조례는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급대상 선정 시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시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나. 입법 적정성

-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의장 수행업무 담당 비서와 차량 운행 담당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권익위 개선권고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여비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상향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성실한 예산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아울러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은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됨.

다. 법적 타당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체계상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됨.

라. 결론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월액여비 지급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에 부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